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조인철 · 권향엽
한준호 · 허 영 · 강준현
송옥주 · 김영배 · 김 윤
서삼석 · 염태영 · 김주영
김남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녹색기업,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·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.

이에,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·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).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”로, “방법 및”을 “방법, 내용 및”으로 한다.

③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작성·공개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. 다만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.

2.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

제38조제1항제1호 중 “제16조의8제1항을”을 “제16조의8제1항 및 제3항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1. <u>제16조의8제1항을</u>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1. <u>제16조의8제1항 및 제3항을-</u> -----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